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12. 4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12. 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위원회(2000. 12. 1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)

제안사유

○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및검사수수료정수조례(99. 7. 29 제정)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 및검사수수료정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(안 제8조제2항)

3. 질의답변 요지

○ 해당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8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사유

-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(99. 7. 29 제정)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을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(안 제8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(생략) ②(생략) 1.~2. (생략) 3. <u>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</u> 4. ~6. (생략)	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(삭제) 4. ~6 (현행과 같음)